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. 6. 22 선고 2020가단1118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

담당변호사 조현수, 김형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현

변 론 종 결 2021. 5. 11.

판 결 선 고 2021. 6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C와 피고 사이의 일자불상경 증여를 1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판단

가.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, 2019. 9. 18. 선고되어 2019. 10. 5. 확정된 판결(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김포시법원 2019가소1938)에 따라, 원고가 C에 대하여 ‘1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2.부터 2019. 5. 1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’의 채권(이하 ‘이 사건 판결금채권’이라 한다)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, C와 그 전처인 피고 사이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있다.

다. 사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.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여하한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금원지급행위의 일시, 규모는 물론, 그 법적 성격이 증여인지도 밝혀진 것이 없다. 원고 자신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취소를 구하는 ‘증여계약’의 성립일과 증여 대상을 최소한이나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성환